

2025년 충청북도 스마트공장(기초)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2차 모집공고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충청북도 스마트공장(기초)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충주시장,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구축비 지원
- 총괄기관 : 충청북도 및 4개 시·군
- 수행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II. 지원대상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사업장 소재지 기준

No	지역	구축목표(개사)
1	충주시	3
2	옥천군	1
3	영동군	1
4	증평군	1
총계(개사)		6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당 총사업비 70백만 원

- 지방비 지원 : 40백만 원 (도비: 50%, 시군비: 50%)
- 기업 자부담 : 30백만 원 이상 *기준 사업비(70백만원) 초과에 따른 추가비용은 기업 자부담

지원유형	지원조건	지방비지원금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등)	4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이상)	6개월 (4개월+2개월 연장가능)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기초->기초)하는 경우		

- ※ '21년 이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간1" 수준 이상을 판정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초" 수준 판정을 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동일수준으로 신청 가능
- ※ 공고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일체에 신청 중 혹은 협약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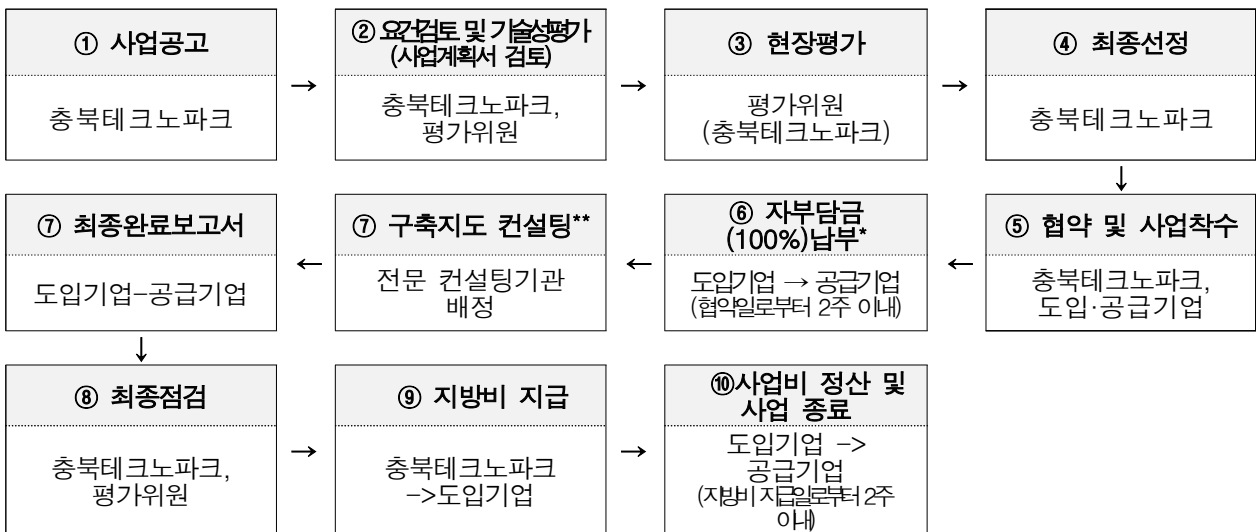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절차 (아래 절차는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업 자부담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된 자부담금에 대하여 공급기업과 협의 후 차액 납부시기 설정 가능(ex. 도입기업 자부담금 4천만원일 경우 ->선금 3천만원 납부, 최종점검(성공) 이후 잔금 1천만원 납부)

** 선정기업은 "25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필수로 신청하여 구축지도 컨설팅을 이수해야함(단, '24년 이후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필수 대상에서 제외함)

IV.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방법

- (요건검토) 필수서류 제출여부, 지원대상 적격 여부, 기업 자부담금 책정 여부 등 확인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서면 평가
 - (현장 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등 현장 평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①요건검토 → ②기술성평가(서면평가) → ③현장평가 → ④최종선정

구 분	기술성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선정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계획의 적절성 등 여부를 서면 방식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평가 통과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일치 등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평가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평가 점수(100%)를 반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로 산정하여 구축지원목표의 1.5배수 내외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점수(100%)를 반영한 고득점 순으로 구축지원목표의 1배수를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탈락 여부 통보

※ 상기 선정방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기준

- ① 기술성평가 :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계획성 등을 평가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내용 타당성(25)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을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15)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소 계(100)			100
가점(5점)	1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22년~'24년) 참여기업	(3)
	2	◦충청북도 본사 소재기업(도입기업)	(1)
	3	◦충청북도 본사 소재기업(공급기업)	(2)
	4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증기업	(2)
합 계(105)			105

※ 동점과제 발생 시 모두 서면평가 합격처리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 각 항목별로 하나의 가점사항만 인정

ex) 뿌리기업, 여성기업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점 하나(2점)만 인정

- 가점 항목(관련 가점 해당 기업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수)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충북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컨설팅을 받은 기업 * 증빙자료 제출 필수(협약서)
본사 소재지(도입기업)	· 도입기업의 본사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본사 소재지(공급기업)	· 공급기업의 본사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뿌리, 여성, 장애인기업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확인서를 받은 기업 * 증빙자료 제출 필수(확인서)

② 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및 참여 의지 등 종합 평가

평가 항목		배점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50)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2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및 지원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20
사업 참여의지 및 이해도 (4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 대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가 적합하고 스마트공장 구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공급기업 과제담당자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가 적합하고 스마트공장 구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사후관리 (10)	◦구축 이후 고도화 추진계획에 대한 목표와 로드맵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0
총 점(100)		100

* 동점 과제는 서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함. 단, 서면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현장평가 평가항목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50)' - '사업 참여의지 및 이해도(40)' - '사후관리(10)' 순으로 항목의 합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함

V.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9일(수) ~ 2025년 11월 21일(금) 17시까지 접수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필수)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 기업 풀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함(공급기업 소재지 TP 승인 必)
- 시스템 오류, 재무제표 데이터 연계 등을 대비하여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권장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상태 확인 必** (접수 마감 이후 “제출완료” 상태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항목별로 제출

<온라인 등록 서류>
▪ (도입기업)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자 명세(구축 사업장 기준)
▪ (도입기업)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024년, 2023년, 2022년)
▪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1부
▪ (도입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도입기업, 공급기업)개인정보수집이용조치 동의서

□ 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T: 043-270-2812 / E: dayoon@cbtp.or.kr)

VI. 기타사항

-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 2021년 이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간1” 수준 이상을 판정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초” 수준 판정을 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동일수준으로 신청 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

장 구축지원사업 ‘ 일체에 신청 중 혹은 협약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함
- 최대 사업수행기간은 4개월이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함
-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총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실(043-270-2950~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